

의안번호	2210836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5. 7. 8.
추계번호	25A3026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)	○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. 다만, 수도권외의 경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한정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3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있음¹⁾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다만, 향후 선포될 특별재난지역,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1~3차에 걸친 지역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그림 1]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“경남·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”, 2024.12.26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